

# **通信秘密保護法의 改正方向**

1999. 12

研究者：宋永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 目 次

第 1 章 序 論 .....	5
第 2 章 通信秘密保護의 憲法的 根據와 制限 .....	7
I. 通信秘密保護의 憲法的 根據 .....	7
II. 通信秘密保護法의 制定背景과 主要內容 .....	8
1. 制定背景 .....	8
2. 主要內容 .....	8
第 3 章 主要外國의 立法例 .....	13
I. 英 國 .....	13
1. 監聽의 目的 및 根據 .....	13
2. 對象犯罪 .....	13
3. 監聽의 要件 .....	14
4. 監聽資料의 證據能力 .....	15
II. 獨 逸 .....	15
1. 監聽의 根據 .....	15
2. 適用對象 .....	15
3. 監聽의 要件 .....	16
III. 프랑스 .....	17
1. 法的 根據 .....	17
2. 監聽對象 .....	17
3. 適用要件 .....	17
第 4 章 現行 通信秘密保護法上 監聽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19
I. 通信秘密保護法上의 監聽制度 .....	19
1. 監聽의 意義 .....	19

2. 監聽의 對象과 範圍 .....	19
3. 監聽의 節次 .....	20
4. 監聽의 根據 .....	21
5. 監聽의 限界 .....	25
II. 現行 監聽制度의 主要爭點分析 .....	25
1. 概 觀 .....	25
2. 監聽의 證據能力 .....	32
3. 監聽의 對象範圍 .....	33
4. 監聽의 許可 · 管轄 · 期間 .....	35
5. 緊急監聽 .....	36
6. 監聽의 方法 및 節次 .....	37
7. 監聽設備의 管理 .....	39
8. 不法監聽의 處罰 및 救濟 .....	40
 第 5 章 要約 및 結論 .....	43
 〈 參考資料 〉 .....	45
I. 通信秘密保護法(現行) .....	45
II. 政府案(98.12.11) .....	52
III. 한나라당안(98.12.7) .....	56
IV. 電氣通信監聽業務等處理指針 .....	59
V.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및 秘密維持에 關한 規則 .....	66

## 第1章 序論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회사를 상대로 개인의 통화내역을 요구하거나 유·무선 전화 및 통신상의 정보유출(감청)을 요구하여 논란을 빚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감청의 범위와 기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골자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이 정부, 야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감청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관계기관들은 안심하고 통화하라는 광고로 홍보하고 있으나 도·감청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해가는 실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및 중요범죄의 수사를 위하여서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1988년 11월 국회 법률개폐소위에 당시 평민당이 제출한 '우편및통신의비밀 보장에관한법률안'은 미처리 상태에서 13대 국회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군사 정권시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온 감청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여(공포 1993.12.27) 이듬해 1994년 6월에 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비로소 수사기관이 효율적인 범죄수사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시행과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법해석이 가져온 불법감청의 문제는 국민의 사생활침해라는 결과를 놓고 있는 바, 지난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근거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를 분석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감청의 실태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각각의 쟁점별로 파악하고 이미 제시된 각계의 법개정안을 비교하여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이 지향해야 할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第 2 章 通信秘密保護의 憲法的 根據와 制限

### I. 通信秘密保護의 憲法的 根據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규정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경우에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어서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불가침성을 기본권의 항목에 규정하여 국민의 헌법상의 소극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통신의 불가침성은 일반적으로 열람의 금지·누설의 금지·정보의 금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통신의 불가침성은 물론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 제17조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들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누린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통신의 자유라 함은 본래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그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또한 사인인 제3자의 통신비밀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사인의 주거내에 설치된 감청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제16조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수사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사생활이나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에 관하여 헌법상 영장주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7. 420면.

## II. 通信秘密保護法의 制定背景과 主要內容

### 1. 制定背景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변모하여 감에 따라 사람들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에 있어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3.12.27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불법검열·감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고,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과 검열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송신인 전화번호 확인이 허용되어 정보수집이나 수사절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 2. 主要內容

#### (1) 通信秘密保護의 目的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 1 조) 이는 고성능 정보통신장비의 개발에 따라 통신의 비밀침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바, 긴급감청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감청 등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여 통신의 자유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통신기관 직원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을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 (2) 通信秘密保護의 適用對象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법 제 3 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선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고 이에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제 2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

이는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최첨단의 통신수단을 자연스럽게 포함하려는 의도로 새로운 통신방식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입법적 불비를 방지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주에서 본다면 동법상의 감청의 대상에는 전통적인 전기·전화통화만이 아니라 텔레스, 팩스, 디지털·아날로그 방식의 전자통신(PC통신, 전자 메일 등) 그리고 호출기, 셀룰러 폰, PCS 등의 이동통신수단 등이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미국<sup>2)</sup>에서는 “유선, 전자적 또는 구두통신”을 통신비밀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첫째, “유선통신(wire communication)”이란 “전선, 케이블 혹은 다른 유사한 연결의 도움으로 발신지와 수신지의 지점간의 통신의 전달을 위한 시설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州間이나 외국간 통신 혹은 주간 또는 외국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및 그러한 통신의 전자적인 저장(electronic storage)의 전달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의 공급이나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혹은 작동되는 모든 귀를 통한 전달”을 의미하고, 이 용어는 “무선전화기의 수화기와 본체사이에 전달되는 무선전화 통신의 무선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전화사용자들간의 통신, 통상전화와 이동성 무선전화간의 통신은 유선통신에 포함되나, 이동성 무선전화간의 통신이나 점포내에서의 인터콤 등과 같은 건물 내부의 전화시스템간의 통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후자의 무선통신은 이를 구두통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비밀보호(프라이버시)에

2) 이하에서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제도에 관한 언급은 윤정석,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 문제점’, 「법조」 1993.5(상), 6(중), 7(하)월호 참조.

의 기대가 확립된 것만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일단 통신이 “유선통신”的 범주안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면, 사적비밀보호에의 기대 입증은 불필요하다.

둘째로, “전자적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이란 “주간 혹은 외국 간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선(wire), 라디오(radio), 전자마그네틱(electromagnetic), 전자사진 혹은 광학사진 시스템(photoelectric or photo-optical system)에 의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전달되는 기호, 신호, 문자, 영상, 소리, 자료, 혹은 모든 성질의 정보의 전달”을 의미하나, ①무선전화기의 본체와 수화기사이에 전달되는 무선전화통신의 무선부분 ②모든 유선 또는 구두통신 ③음조만 사용하는 호출장치를 통한 통신 ④추적장치<sup>3)</sup>로부터의 통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sup>4)</sup>

셋째로, “구두통신(oral communication)”이란 “이러한 기대를 정당화하는 상황하에서 자신의 통신이 도청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 사람에 의하여 말하여진 구두의 통신”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전자적 통신”을 포함하지 아니한다.<sup>5)</sup>

### (3) 通信秘密保護의 制限

#### 1)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또는 청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행형법, 파산법 등에 근거하여 복역중인 자나 파산자에 대한 통신의 관리 등은 당해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검열 등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이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3) 추적장치(tracking device)라 함은 “사람이나 물체의 이용에 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적 또는 기계적 장치”를 의미한다. 18 U.S.C.A. § 3117(b)

4) 18 U.S.C.A. § 2510(12)

5) 18 U.S.C.A. § 2510(5)

## II. 通信秘密保護法의 制定背景과 主要內容

### 2) 국가목적수행을 위한 예외허용

통신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증거수집, 범인체포 등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열이나 감청 등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 7 조)

### 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이 가능한 범죄는 모든 범죄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 외환, 살인, 체포, 감금, 강도, 공갈 등 중요범죄 및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비교적 그 죄질이 중한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법 제 5 조제 1 항)

또한 위와 같이 일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검사가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여 그 발부받은 허가서에 의해서만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위와 같은 허가를 신청하며, 검사는 제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 6 조)

### 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찰청, 경찰청, 기무사,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통신 당사자가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통신의 쌍방당사자 모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한 것은 국가안보라는 목적아래 국민의 사생활비밀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법 제 7 조)

### 5) 대화녹음과 청취

대화도청과 관련해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

## 第2章 通信秘密保護의 憲法的 根據와 制限

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통신제한조치허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대화녹음이나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 6)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도

최근 전화를 이용한 폭언, 협박, 성적희롱 등이 빈발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전화사용범죄로부터 수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전화에 의해 폭언, 협박, 희롱 등을 받았을 경우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를 신고하고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sup>6)</sup>

---

6) 법무부, 법과 생활, 1995.

## 第 3 章 主要外國의 立法例

### I. 英 國

#### 1. 監聽의 目的 및 根據

영국에서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청은 1985년에 제정된 '통신감청법'(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ct : ICA)에 규정되어 있다.

통신감청법(ICA)은 영국 내무성이 발행한 백서<sup>7)</sup>에 의하면 우편, 통신체계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의 매개를 그 대상으로 하며, 편지, 전화, 텔레스, 전보와 데이터의 전달 또는 팩시밀리와 같은 더 확장된 방식의 전자적 전달이 이에 포함된다.

통신감청법 제 2 조(2)에서는 우편 및 통신의 감시를 정당화시키는 3가지의 목적이 열거되고 있는데, ①국가의 안전 ②범죄의 억제 또는 발견 ③영국의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 그것이다. 이 법은 이와 같은 목적 설정을 통하여 형사소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2. 對象犯罪

통신감청법 제 2 조는 감청처분의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감청의 집행은 중범죄(serious crime)에만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국한되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동법 제10조제 3 항은 중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①폭력을 사용하고, 많은 재정적 수익을 수단으로 또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범죄가 저질러지거나, ②만 21세에 달하고 전과가 없는 사람이 3년 또는 그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것이 예견되는 범죄가 행해졌을 때 중범죄가 범하여졌다고 한다.

7)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in the United Kingdom, 1985, Cmnd. 9438, para.12(a). 이하의 백서내용은 이재상,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에서 참조.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라야 감청의 처분이 가능한가를 규정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통신감청법에 관한 정부의 백서에 의하면<sup>8)</sup> 중범죄가 저질러졌을 경우 감청처분의 요건으로는 감청이 개연성 있게(be likely to) 범인의 체포 또는 유죄결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상당한 이유(good reason)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실무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법 제2조(2)에서 감청의 처분을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비례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 3. 監聽의 要件

감청의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통신감청법 제4조에 의하면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무장관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장관도 그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한다.<sup>9)</sup> 긴급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고위관리가 장관의 구두위임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2일 이내에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영장의 일종인 감청명령허가서(warrant)는 보통 경찰의 서면신청을 근거로 발급한다. 영장의 발급시 기재사항은 보통 감청대상자의 신원, 감청의 이유, 종류, 범위, 기간 등이다.

감청의 집행은 통신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그 종사자들이 하게 되어 있다(제2조(1)). 획득된 자료는 주무경찰관서에 넘겨지게 된다. 감청의 유효기간은 동법 제4조(6)(a)에 의하면 두 달이다. 중범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제4조(3)) 그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으나, 한차례에 한하여 한 달로 제한되어 있다(제4조(6)(b)). 기간연장이 없을 경우 감청명령은 유효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그 효력을 잃는다(제4조(2)). 그러나 제4조(4)에 의하면 감청이 범죄규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장관은 감청명령을 실효시킬 수 있다. 감청에 관련된 서류의 파기에 관하여서는 제6조(3)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복사본, 적요 그리고 도청내용의 개요와 정보대상인물에 관한 모든 서류철 등은 그것의 보관이 제2조(2)상의 중범죄의 소추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로 파기하여야 한다.

8) Cmnd. 9438, para.20.

9) Cmnd. 9438, para.10.

#### 4. 監聽資料의 證據能力

통신감청법 제9조는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영국에서 감청이란 계속되는 수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 집행된다고 할 것이다.

### II. 獨逸

#### 1. 監聽의 根據

독일에서의 1968년 8월 13일에 제정된 '편지·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1992년 9월 22일에 발효한 '불법마약거래 및 기타 형태의 조직 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s illegalen Rauschgifthandels und anderer Erscheinungsformen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에 법적 근거 조항이 삽입되면서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이 본격화하였다.

#### 2. 適用對象

우선 '형사소송법' 제100a1항1절은 전기통신의 감시와 녹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전달수단을 포함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전통적인 전기·전화통신 뿐만 아니라 텔레스, 팩스, 화면자료의 전송과 디지털·아날로그 방식의 전자통신을 포함하고 있다. 감청은 동법 제100b3항과 '통신설비법' 제10조에 의하면 연방체신기관의 설비만이 아니라 민영체신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서도 할 수 있다.

동법 제100c는 기계·전자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주거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거라 함은 기본법 제13조에서 말하고 있는 사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를 의미하며, 감청은 이 사적인 생활공간 밖에서 행해지는 대화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사업장 또는 공공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내에 감청장치를

### 第3章 外國의 立法例

하거나 잠입수사관이 감청기를 몸에 부착한 채 주거내에 들어가서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동법 제100a1항과 제100c에 의하면 감청은 이미 행해진 범죄의 형사소추를 위한 증거수집에 국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감청의 대상범죄로는 국가안보에 관한 범죄, 화폐나 유가증권의 위조, 살인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범죄, 강도와 그러한 성질의 협박범죄, 공안을 해치는 범죄, 무기법과 전쟁무기의 통제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그리고 마약이나 무기밀거래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되는 조직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 3. 監聽의 要件

동법 제100b와 제100d에 의하면 감청명령의 권한은 전적으로 판사에게만 귀속되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와 그 보조원이 그 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3일 이내에 판사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감청영장의 발급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관련죄명과 이유, 관련자의 성명과 주소, 감청의 방식 및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하며, 전화감청의 경우에는 회선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감청의 필요성 및 이유도 명기되어야 한다.

감청의 집행은 동법 제100b3항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인 그의 보조원에게 귀속되며, 연방체신기관과 민영체신기관은 필요한 접속을 함으로써 통신의 청취·녹음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감청의 명령은 최장 3개월까지로 되며 필요한 경우에 석달을 기한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연장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거나 감청의 전제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감청을 끝내야 하며, 이를 판사와 연방체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00b4항). 감청으로 획득한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감독하에 파기한다(동법 제100b5항).

동법 제101조제 1 항은 감청사실의 고지가 수사의 목적을 위태화시키지 않고 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경우 즉시 관련자들에게 감청의 사실을 고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 대상자는 피감청자는 물론이고 통신회선의 소유자도 해당된다.

### III. 프랑스

#### 1. 法的根據

프랑스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감청이 일상적인 수사방법이었다. “예심판사는 사실의 실체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적합하게 모든 조사행위를 감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81조의 일반조항을 근거로 하던 감청처분은 그 법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되어 “도청과 관련한 프랑스의 법적 상황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예측하게 하는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도청권한의 남용에 대한 보호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 8 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되었다. 그리하여 1991년 7월 10일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통신비밀감청법’(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sup>10)</sup>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00조부터 제100-7조<sup>11)</sup>에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2. 監聽對象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감청의 권한은 명백히 모든 원거리 의사전달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통신에까지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도청은 단순한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다양하고 현대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감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텍스트, 팩스, 텔레스, 카폰 등이 그것이다. 감청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범위로는 범죄혐의자, 공갈·협박을 당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범인과의 의사교환자 그리고 범인이 그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하고는 관계없는 제 3 자의 대화도 감청할 수 있다.

#### 3. 適用要件

감청<sup>12)</sup>은 범죄수사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도 집행될 수

10) *Loi n° 91-646, JO 13 juill. et rect. 10 août 1991.*

11) *V.C.proc.pén., Art. 100 à 100-7*

12) 이러한 감청(écoute administrative)은 예심판사가 명한 ‘사법적’ 감청(écoute

### 第3章 外國의 立法例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감청은 통신비밀감청법 제3조에서부터 제19조 사이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감청은 국가의 안전, 프랑스의 학문적·경제적 이익의 보호, 조직범죄와 테러범죄의 저지를 위하여 예방적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예방적 목적의 감청은 국방장관, 내무장관 및 관세청장의 재청으로 이루어 진다.

감청의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회선소유자의 성명과 회선번호, 죄명,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청은 최대 4개월까지 할 수 있고, 형태와 기간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여러차례 갱신 할 수 있다.

보안감청통제국가위원회(CNCIS: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s interceptions de Sécurité)에서는 피감청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이에게 감청사실의 유무를 확인하여 통지해주고 적법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감청에 대하여 그 중단을 요구한다.

---

judiciaire)'이나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서 위법하게 행해진 '타인에 의한 불법감청 (écoute sauvages)'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http://vosdroits.admifrance.gouv.fr>

13) *Loi n° 91-646, Art. 3 à 19*

## 第 4 章 現行 通信秘密保護法上 監聽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I. 通信秘密保護法上의 監聽制度

#### 1. 監聽<sup>14)</sup>의 意義

정보통신상의 검열행위를 법적용어로 '감청'이라고 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항)<sup>15)</sup>

이러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특히 필요한데 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 또는 대화의 녹음·청취를 하는 경우라도 이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조)

#### 2. 監聽의 對象과 範圍

합법적인 감청이란 법에 정해진 대로 사전·사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14)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포함하는 통신에 대한 제한조치는 검열과, 감청으로 나누어진다. 현행법은 이를 '통신제한조치'라 칭하고 있는데 이하 생활사항의 대부분이 전기통신에 대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감청'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15) 미국법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통신이라도 '도청 (intercept)'하는 것을 금지한다. 핵심단어인 "intercept"는 동법에서 "어떠한 전자적, 기계적 또는 다른 장치를 이용하여 유선, 전자적 혹은 구두의 통신내용을 청각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the aural or other acquisition of the contents of any wire, electronic or oral communication through the use of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device). 18 U.S.C.A. § 2510(4)

감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 및 국가안보 관련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는 “범죄의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감청업무등처리지침’에서는 ①전기통신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 ②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③음성사서함 비밀번호 ④당사자의 동의없는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을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전기통신감청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단,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상적인 전기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화요금 부과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화내역’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①가입자 주소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가입자 인적사항 ②통화일시, 통화개시·종료시간, 상대가입자번호, 사용도수와 같은 비실시간 통화내역으로 정하고 있다.

### 3. 監聽의 節次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되면, 즉 감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분류가 되면,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은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법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통신제한조치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3항)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제5항·제6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서 3월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제7항·제8항)

#### 4. 監聽의 根據

통신비밀보호의 근거법률인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동시에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의 근거법률이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안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수사를 위한 감청이다. 살인, 강도, 마약, 유괴사범과 같은 일정한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3개월까지 유효한 감청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감청이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경우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이 내국인인 때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6개월까지 유효한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개월까지 감청할 수 있다.

셋째, 긴급감청이다. 이는 법원 등에 즉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정보수사기관이 일단 감청을 실시하고 48시간 내에 법원의 감청영장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세가지 방법 이외의 감청은 모두 불법감청이며 그 불법감청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합법적인 감청에 의해 수집된 자료라 하더라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동일하게 처벌된다.

현재 감청은 국가안보와 수사목적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및 기무사 등이 행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은 한국통신 산하 전화국의 전화고장 시험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청한다.

이 밖에도 통신공간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사법적인 판단없이 임의적으로 개인 정보를 넘겨주도록 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나, 기본권 보다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는 이유를 앞세운 동법 제53

조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개별 법률상 감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의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중지·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표적인 위헌소지 조항으로 꼽힌다. '불온통신' 조항과 결합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제 4 항제 2 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 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전기통신화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업무를 행한다.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라는 자구다. 앞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 심의로 해석해야 하는 게 분명한데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심의'의 대상이 된다. 사전 심의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사전검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 3 항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업자에게 요구해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도용할 수 있다. 각 PC통신사의 '이용약관' 대부분이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의외로 쉽게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C통신사업자에 따라 신상

정보 보호에 대한 입장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텔의 경우 이용약관에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신상정보를 누설 또는 공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할 때, 또는 수사상 목적으로 영장제시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매달 이용자 5,6명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사실이 통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천리안의 경우도 관련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요구할 때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바, “공식문서를 제시할 때만 검경에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구두로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우누리, 유니텔 등도 이용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하이텔, 천리안과 유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sup>16)</sup>

정보통신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정서이지만 통신공간상의 개인정보는 언제 어느 때라도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유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의하면 간단한 서면만으로 수사기관의 어느 누구든지 개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 청소년보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7 조 (매체물의 범위)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제 6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동아일보 1996.9.30.

이 법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각종 매체물에 대한 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범위로는 음반, 비디오, 전자오락, 방송, 광고 잡지, 신문 등 모든 매체물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상에서처럼 '전기통신을 통한 문자, 음성, 영상정보'라고 하여 정보통신에 관계한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 8 조

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남위사건'<sup>17)</sup>에서는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강력한 검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7) 울산과 부산에서 일어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한 개인의 사생활이 수사기관에 의해 서 3년간 지속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되고 전화도청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 5. 監聽의 限界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는 무제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의 이른바 법률유보조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통신비밀의 불가침성원칙의 예외로서 작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원리에 합치하는 법률만이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서나 또한 그것을 적용할 때에 기본권 제한의 전제와 범위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 명확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진 헌법상의 또 다른 원리들, 즉 비례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은 제37조제2항의 후단에서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명문화하고 있다.<sup>18)</sup>

## II. 現行 監聽制度의 主要爭點分析<sup>19)</sup>

### 1. 概 觀

#### (1) 監聽의 現況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감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통신업체가

18) 이와 관련하여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해석하는 '통신의자유침해등위원회' (96헌마398전원재판부)에서 "현행법령과 제도하에서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대한 검열로 인하여 수형자의 통신의 비밀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19) 정부는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함께하는시민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청원서를 각각 제출한 바, 이하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논점별로 나눠서 대별하고자 한다.

#### 第4章 現行 通信秘密保護法上 監聽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화정보가 60만3천4백85건에 달하고 기관별로는 경찰이 53만9백79건, 검찰이 10만4천1백30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출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98년에 9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넘겨지는 아이디 감청도 올 상반기 중에 86건으로 지난해의 67건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이뿐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인 전자우편에서 조차 수사상의 목적을 이유로 열람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98 사이버 권리백서」에 의하면 아이디와 개인정보 유출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와 「형사소송법」 제199조<sup>21)</sup>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심지어 법률 조항을 밝히지 않고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98년 6월말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감청협조한 건수인 3,580건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한 바, 이하와 같다.<sup>22)</sup>

〈감청건수의 통신방식별 구분(이동전화, PCS)〉

아날로그	디지털	계
28	753	781

20) 진보네트워크,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1999.9.17.

21)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2) 국가정보원은 최근의 감청시비와 관련한 전해 표명에서 1999년 상반기에 225건(허가건수 기준)의 합법적인 감청활동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①간첩 6명과 정보사범 16명 등 총 22명 검거 ②마약밀매조직 총 99건 462명의 적발, 400억 7천만원 상당의 마약 압수 ③총기밀매 조직 19건 42명 적발, 총기 35정의 압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1999.10.19.

II. 現行 監聽制度의 主要爭點分析

〈전기통신감청현황(1998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구 분	계 (긴급감청포함)	긴급감청		
			완료	중지	계
검찰	일반	853	80	134	214
	안보	-	-	-	-
	계	853	80	134	214
경찰	일반	2,044	193	174	367
	안보	96	1	5	6
	계	2,140	194	179	373
국가정보원	일반	278	1	2	3
	안보	119	-	-	-
	계	397	1	2	3
군수사기관	일반	159	35	12	47
	안보	4	1	-	1
	계	163	36	12	48
기타	일반	27	1	-	1
	안보	-	-	-	-
	계	27	1	-	1
계	일반	3,361	310	322	632
	안보	219	2	5	7
	계	3,580	312	327	639

\*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192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종합(1998.10.23)

## (2) 監聽의 問題點

1993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청을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어도 처벌할 수는 없었다. 즉 이 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도청에 대한 처벌과 감청의 합법적인 근거 및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도청·감청의 유형을 민간기업이나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정부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때, 전자는 정부가 감시 처벌하겠다는 의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는 실행력에 한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는 정부기관이 그 실행주체인 만큼 의지나 실행력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 1) 任意的 監聽

범죄수사와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감청을 합리화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범죄자의 범죄수단만 지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한 방안이 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① 監聽對象

현재 감청이 가능한 범죄는 '형법'상의 거의 모든 범죄와 '군형법'에 규정된 일부 범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이다. 통신제한조치는 위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법 제5조) 그러나 허가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많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제7조(찬양·고무 등)가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고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통신제한조치가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sup>23)</sup> 이 때문에 모든 범죄수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면죄부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3) 장주영, '불법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998.

## II. 現行 監聽制度의 主要爭點分析

또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범행증거 확보를 위하여 정치, 경제, 언론, 노동, 종교계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동향파악 의혹이 있어 왔는데, 심지어 수사기관 관계자와 같이 공권력의 집행기관<sup>24)</sup>에 대해서도 감청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다.<sup>25)</sup>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대상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정형이나 범죄의 성격을 기준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 ② 監聽內容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감청은 전화내용과 대화내용의 청취·녹음, 우편물의 검열 등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감청이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정치사찰을 하기 위하여 감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안전보장이란 미명하에 감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사찰을 위한 감청도 사실상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감청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 ③ 緊急監聽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일단 긴급감청을 실시한 뒤 감청영장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유괴범을 검거해야 할 경우처럼 촉박한 때에도 일일이 법원에 감청영장을 청구하면 검거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감청의 효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긴급한 수사나 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마구잡이식의 긴급감청으로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 ④ 監聽期間

현재 일반범죄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을 3월까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3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법 제 6 조제 7 항), 국가안보사

24) 진형구 전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과정에서 드러난 휴대폰 사건은 불법감청 및 도청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5)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감청은 불법이라 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집단밀항,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살인, 조직폭력의 총기사건, 마약밀수 및 판매의 네가지 경우에만 감청이 가능하도록 그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第4章 現行 通信秘密保護法上 監聽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법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은 6월까지, 필요에 따라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26)</sup>(법 제 7 조제 2 항)

통신제한조치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함은 반드시 3월간 허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3월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사편의상 기간을 최장기간인 3월로 정하여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으로서는 허가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해서 허가할 가능성은 없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영남위사건'에서도 모두 3월간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었다. 그런데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되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을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져 통신제한조치의 목적과 대상, 범위 등이 대부분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보충적으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 허가요건이 존속하면 기간연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월이라는 장기간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이유나 필요성은 없으므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이 야당 및 시민단체의 견해이다.

#### [관련판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 : 소위 영남위사건)

'영남위사건'에서 수사기관(부산지방경찰청)이 법원으로부터 ①통신제한조치의 종류로는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②대상과 범위로는 전화감청의 경우 대상전화에 대한 전화감청, 녹음, 상대통화자의 확인, 통화내역 및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검열과 PC통신내용수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하여 전화내용과 대화내용을 청취·녹음하고 우편물을 검열하였으며 PC통신내용을

26) 미국에서는 감청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실무상 대개의 연방영장은 30일보다는 15일 또는 20일 동안 감청을 허가한다고 한다. 그외 영국의 최장 감청기간은 2개월, 프랑스는 4개월, 독일은 3개월이다. 이재상,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1996.

## II. 現行 監聽制度의 主要爭點分析

수취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1996년 4월 30일에 허가 받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996년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월이었다. 그 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결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의대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및 범위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즉, 처음 기간인 3개월 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 또는 대상전화를 생략하거나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에 대화녹음을 추가하는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를 바꿔가면서 1998년 5월 6일까지 3개월에 한번씩 8차례에 걸쳐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연장의 회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연장회수가 1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연장결정을 하게 되므로 허가서에 준하여 연장결정이 매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남위사건'에서는 이에 반하여 기간연장이 결정되었다. 연장회수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계속 감청 등이 필요하다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허가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기 전에 청구기관내부의 통제방법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바<sup>27)</sup> 법원이 허가서나 연장결정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심사하는 것이 불법감청을 통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와 연장결정을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만일 법원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와 기간연장결정이 무제한적으로 행해진다면 범죄수사를 위한 예외적인 통신제한조치허가가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감청을 견제·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불법감청행위에 합법화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sup>28)</sup>

27) 미국법에서는 수사관이 감청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법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특별히 지명한 법무장관보 등의 내부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연방검찰의 모든 도청신청을 검토하는 부서를 연방에 따로 설치하여 이 사람이 연방법관에게 도청영장의 발부를 신청한다고 한다. 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차장검사,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윤정석,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의 문제점', 법조, 1993.7(하), 108면.

28) 장주영, 앞의글.

## 2) 公權力執行의 透明性 등 缺如

감청이나 도청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관은 물론이며 제3자의 객관적 위치에 있는 시민대표의 동의없이 행해지는 감청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감청 즉, 정부기관의 공권력행사는 임의적·자의적으로 될 수 있고, 법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현재 감청의 법적절차에 있어서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검열, 도청, 감청행위가 이미 관행화되어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조직적인 검열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누가 감청의 대상이 되었는지가 끝까지 숨겨지고 감청의 결과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저항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단계는 물론 감청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순번제로 돌아가는 당직판사일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수사에 있어서 감청의 필요성에 대한 판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감청영장을 발부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감청전담직원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監聽의 證據能力

현행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 및 시민단체의 개정안<sup>29)</sup>에서 는 감청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감청이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29) 야당인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감청내용은 지워버리도록 하는 ‘인권보호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감청의 증거능력 제한	
정부안 (1998.12.11)	
한나라당안 (1998.12.7)	적법한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안 제4조제2항 신설)
함께하는 시민행동안 (1999.10.2)	상동
경실련안 (1999.10.23)	상동

### 3. 監聽의 對象範圍

현재는 범죄의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도 광범위하여 '형법'상의 거의 모든 범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특별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법 제5조)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는 감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광범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이에 더하여 일부 범죄의 경우 감청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상범죄에서 누락되어 있는 범죄를 추가하여 대상범죄를 확대·조정하고 있다.<sup>30)</sup> 이에 야당 및 시민단체의 안에서는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수집차원의 감청을 불허하고 있다.

30) 그러나 여야간에 대립이 계속되고, 시민단체의 반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감청범위를 최종적으로 보다 축소하고, 진급감청 시간을 단축하며,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법개정안을 수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9.10.22.

감청의 대상범위	
정부안 (1998.12.11)	<p>1. '형법'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중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및 선거방해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권리행사 방해·강요·점유강취, 중권리행사 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감청 대상범죄에서 제외함.</p> <p>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직폭력사건의 경우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상부선 파악이 곤란하므로 동법에 규정된 단체등의 구성·활동, 단체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함(안 제 5 조제 1 항제10호의2).</p> <p>3. 총기류의 밀수입 및 유통의 증가로 총기류에 의한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총기류 등의 유통사법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 범죄에 추가함(안 제 5 조제 1 항제10호의3).</p>
한나라당안 (1998.12.7)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중 사회적인 해악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을 삭제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 5 조제 1 항).
함께하는 시민행동안 (1999.10.2)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수집차원의 감청을 불허하고,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을 삭제함. 국가안전보장, 마약, 조직범죄단체, 군사쿠데타, 유피나 인질범죄, 폭발물이나 총기등에 의한 공공테러 등 6개 유형의 범죄로 감청대상을 한정함(안 제 5 조제 1 항).
경실련안 (1999.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범죄의 예비, 음모단계에서부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예비단계에서 감청을 불허함. 범죄를 실행하였거나 또는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li> <li>- 감청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도 사회적인 해악이 경미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정조에 관한 죄 등을 삭제하고 국가안보관련 범죄, 조직 및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 3대분야 17개 범죄로 한정함.</li> </ul> <p>형법중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약취·유인의 죄, 군형법중 반란, 이적, 살인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축소함(안 제 5 조제 1 항).</p>

#### 4. 監聽의 許可 · 管轄 · 期間

##### (1) 事前許可主義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감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2) 管轄法院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청구를 받을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법 제6조제3항). 정부안에서는 현행관할법원의 범위만으로는 수사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며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로 관할법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안 제6조제3항).

##### (3) 監聽期間

감청기간과 관련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2월로 일제히 단축하고 있다.

감청의 허가·관할·기간	
정부안 (1998.12.4)	- 관할법원 :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안 제6조제3항)

#### 第4章 現行 通信秘密保護法上 監聽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한나라당안 (1998.12.7)	- 허가절차 : 검사가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할 경우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기간 : 범죄수사인 경우 1월, 국가안보인 경우 2월(안 제 6조 및 제 7조).
함께하는 시민행동안 (1999.10.2)	- 기간 : 범죄수사인 경우 1월, 국가안보인 경우 2월(안 제 6조 및 제 7조)
경실련안 (1999.10.23)	- 기간 : 범죄수사인 경우 1월, 국가안보인 경우 2월(안 제 6조제7항 및 제 7조제2항)

#### 5. 緊急監聽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없이 통신제한 조치를 취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긴급처분(긴급감청) 조항에 대하여(법 제8조) 정부안은 종전의 48시간이내에서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단시간내에 감청목적을 달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에 감청대상·목적·기간 등을 통보하는 '긴급감청통보제도'를 신설하였다(안 제8조). 야당 및 시민단체는 긴급사안이라는 명목으로 48시간이내에 누구나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수사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무상 감청단계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되면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감청하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처음부터 영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감청을 하는 경우 등 감청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체포, 구속에 대하여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헌법적 근거(헌법 제12조제3항 단서)가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헌법상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긴급감청제도 자체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sup>31)</sup>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청원」, 1999.10.23.

## II. 現行 監聽制度의 主要爭點分析

긴급감청	
정부안 (1998.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감청등의 집행착수시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이를 중지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긴급감청 등의 경우에도 36시간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함.</li> <li>- 단시간내에 감청목적을 달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감청대상·목적·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긴급감청통보제도를 신설함.</li> <li>- 사법경찰관이 실시하는 긴급감청등의 경우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감청등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li> <li>- 검사나 사법경찰관 모두는 반드시 긴급감청서등에 의하여 긴급감청등을 하고 관련 장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함(안 제 8조).</li> </ul>
한나라당안 (1998.12.7)	현행 긴급처분제도를 폐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방지함(안 제 8조).
함께하는 시민행동안 (1999.10.2)	상 동(예외없는 사전허가주의를 분명히 함(안 제 8조))
경실련안 (1999.10.23)	상 동(안 제 8조)

### 6. 監聽의 方法 및 節次

야당안과 시민단체안은 감청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에서 집행하거나 감청선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만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 사후심사를 위해서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부분 및 집행대장을 보존, 비치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합법적이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감청방법 및 절차	
정부안 (1998.12.11)	
한나라당안 (1998.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청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 등 한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함.</li> <li>- 자동녹음에 의한 감청은 원칙적으로 금함.</li> <li>- 감청이 종료된 후 90일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통지함.</li> <li>- 이의 위반시 형사처벌 함(안 제9조·제16조 및 제17조)</li> </ul>
함께하는 시민행동안 (1999.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부분 및 집행대장을 보존·비치하도록 함.</li> <li>-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 등으로 집행장소를 제한하고 자동녹음을 금지하는 등 집행방법을 제한함.</li> <li>- 통신제한조치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상태가 합법적이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9조, 제13조의2, 제14조).</li> </ul>
경실련안 (1999.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청의 집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 포함)에서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감청선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만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음.</li> <li>- 감청을 할 경우 자동녹음은 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자동녹음을 하더라도 허가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이외의 것은 즉시 삭제함.</li> <li>- 감청을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이 종료된 시점에서 30일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기간 및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li> <li>- 감청의 대상자임을 알게된 자는 자신에 대한 감청이유, 감청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감청을 집행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의 장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li> <li>- 감청의 내용을 공개받은 자는 그 내용중 감청이유를 초과하는 범위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는 감청을 청구한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에 그 내용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9조 제3항 내지 제7항).</li> </ul>

### (1) 監聽 事實의 通報

감청이 문제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청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우편물, 전신을 압수한 뒤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sup>32)</sup> 또한 감청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통신비밀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해 형사상의 소송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저항권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sup>33)</sup>

### (2) 監聽 結果의 公開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2회의 전체적인 감청결과에 대하여 감청 민간위원회나 국회에 통보함으로써 실제로 감청이 범죄 수사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청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감청을 줄이도록 한다. 이 때는 감청 결과로 몇%가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 (3) 監聽 場所의 制限

불법 감청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감청이 공개된 장소나 기관 이외의 곳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청을 통신사업자의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의 임의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7. 監聽設備의 管理

현재는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야당안과 시민단체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모든 감청 설비의 사용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32) 일본에서는 '통신방수법' 등에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변재승, 조선일보 1999.10.16.

33) 김동노, '통신비밀보호, 이루어질 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1999.10.2.

감청설비의 국가관리	
정부안 (1998.12.11)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되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0조제1항).
한나라당안 (1998.12.7)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된 설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관리하였는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10조).
함께하는 시민행동안 (1999.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이 자체감청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li> <li>- 인가된 설비에 대한 적법한 관리여부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li> <li>- 허가없이 자체감청설비를 사용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 및 제9조제4항에 규정하는 감청장소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청설비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의 통제를 강화함(안 제10조).</li> </ul>
경실련안 (1999.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감청설비의 사용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제1항).</li> <li>- 수사기관이 허가없이 자체감청설비를 사용하여 행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과 감청장소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청설비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감청설비의 통제를 강화함(안 제10조제5항).</li> </ul>

## 8. 不法監聽의 處罰 및 救濟

현행법은 우편물의 검열, 전화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법 제16조),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인가를 받

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신고를 한 자,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법 제17조). 이에 대하여 야당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처벌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초과하고, 이를 중지하지 아니 한 자,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하고 있는 자동녹음으로 감청하거나 이를 도와준 자, 범죄혐의외의 감청내용을 녹음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도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 (1) 通信秘密保護法의 補完과 處罰強化

#### 1) 通信秘密保護法의 補完

정부기관에 의한 감청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개정입법에서는 범죄를 계획하는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은 허용하지만 정보수집차원의 감청은 불가하도록 한다. 긴급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감청의 허용범위도 안보, 조직범죄, 마약, 유괴로 최소화하고, 감청기간을 일반범죄는 1월, 안보사범은 2월로 한다. 자동녹음은 불허하되 범죄와 관계되는 내용만을 녹취하도록 하고, 감청장소는 통신사업자의 공공장소로 한정한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시민단체의 대체적인 견해는 위와 같다.

#### 2) 通信秘密侵害에 대한 處罰強化

실제로 정부기관에 의한 통신비밀의 유출보다는 개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청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공권력 집행기관인 정부는 그 자체의 불법 감청을 방지해야겠지만 민간인들 사이의 도청도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근절시켜야 한다.

이에는 처벌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은 물론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개인사생활보호법(가칭)'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sup>34)</sup>

3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서', 1999.10.23.

### (2) 通信秘密保護를 위한 民間委員會 構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를 형성하고, 감청대상이 되는 잠재적 피해자의 저항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국회, 정부기관을 포함하는 '통신비밀보호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감청을 실행하는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도록 한다. 이 위원회가 감청의 대상, 기간 등 감청의 원칙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고 감청결과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기구로 작용하게 하고, 통신보호인증제를 실시하여 감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저항권을 확보하도록 한다.<sup>35)</sup>

### (3) 國民의 監視·牽制, 國會의 監視機能 強化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동의할 경우 관련자료의 열람이나 교환실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감청을 집행하는 기관은 감청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집행기관통제를 강화한다.<sup>36)</sup>

### (4) 認證委員會의 設立

현재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정부기관이나 개인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은 거의 무방비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정보유출의 방지는 향후 통신사용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통신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신비밀도 보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통신사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서 제시한 통신비밀보호위원회(가칭) 산하에 인증위원회를 설립하여 통신비밀이 보장되는 통신사이트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 인증을 해주고 그 결과를 공지하는 방안이 있다.

35)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서', 1999.10.; 김동노, '통신비밀보호, 이루어질 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 발제문, 1999.10.2.

36) 한나라당안 제15조, 시민행동안 제15조.

## 第5章 要約 및 結論

통신의 발달로 도래한 정보화사회 이면에는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통신비밀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바, 통신비밀보호법의 긴급감청이 그러하다. 이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실제의 수사 과정에서는 편의대로 감청이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를 낳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법수요가 있어온 바, 대표되는 몇가지 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언급한 쟁점 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청의 증거능력 문제이다. 현재는 불법감청의 증거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야당 및 시민단체는 적법한 감청이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감청의 대상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감청의 범위를 안보, 조직범죄, 마약, 유괴로 최소화하고 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야당 및 시민단체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한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수집차원의 감청을 불허하고 있다.

셋째, 감청의 기간이다. 야당 및 시민단체의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2월로 일제히 단축하고 있다.

넷째, 긴급감청이다. 정부안은 종전의 48시간이내에서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단시간내에 감청목적을 달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에 감청대상·목적·기간 등을 통보하는 긴급감청통보제도의 신설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수사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감청의 방법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안은 감청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에서 집행하거나 감청선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만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감청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우편물, 전신을 압수한 뒤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두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감청결과의 공개이다. 정기적으로 최소한 연2회의 전체적인 감청결과에 대하여 감청민간위원회나 국회에 통보함으로써 실제로 감청이 범죄 수사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를 검토하여 감청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감청을 줄이도록 한다.

여덟째, 감청설비의 관리이다. 현재는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야당안과 시민단체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모든 감청설비의 사용은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감청의 처벌 및 구제이다. 현행법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정부와 시민단체는 10년이하의 징역 및 5년이하의 자격정지로 불법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밖에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 국민의 감시·견제, 국회의 감시기능 강화, 인증위원회 설립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본래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考資料〉

### I. 通信秘密保護法(現行)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0호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통신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기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계·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 3 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 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

## 〈参考資料〉

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 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 (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형사소송법 제92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제19조 및 군사형법 제15조·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자에 대한 통신: 파산법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 전파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제 4 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 3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 2편중 제 1 장 내란의 죄, 제 2 장 외환의 죄, 제 4 장 국교에 관한 죄, 제 5 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 6 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 7 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9 장 도주의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 제14장

## I. 通信秘密保護法(現行)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 2 편중 제 1 장 반란의 죄, 제 2 장 이적의 죄, 제 3 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 4 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 5 장 수소이탈의 죄, 제 7 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 8 장 항명의 죄, 제 9 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 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11. 제 1 호와 제 2 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 6 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 5 조제 1 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 5 조제 1 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청구를

## 〈参考資料〉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 5 조제 1 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제 5 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 및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5 조제 1 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 7 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협의가 있는 국민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1 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 6 조제 2 항·제 4 항 내지 제 6 항 및 제 8 항은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관을

## I. 通信秘密保護法(現行)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 5 조제 1 항"은 "제 7 조제 1 항제 1 호"로 한다.

④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①사전의 사법경찰관이 제 5 조제 1 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 6 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 7 조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 7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 6 조 및 제 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 6 조 내지 제 8 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기타 관직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연월

## 〈参考資料〉

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수입·배포·소지 또는 사용하는자는 인가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와 수량,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해당기관의 부품대장에 기재한다.

⑤제 1 항의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비공개의 원칙) ①누구든지 제 6 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 5 조제 1 항의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 1 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3조 (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 (타인의 전화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 4 조 내지 제 9 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국정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

## I. 通信秘密保護法(現行)

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 3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화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9조제 2 항(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신고를 한 자
3. 제10조제 3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미수법)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법은 처벌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임시우편물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 2 호를 적용한다.

## II. 政府案(98.12.11)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제안일 : 1998.12.11)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의 제목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 1 항 본문중(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를 (이하 감청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 5 조제 1 항제 1 호중 제 7 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9 장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중 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82조·제183조의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중 제185조 내지 제188조·제190조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를 제 7 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 9 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5조의 죄로,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로 한다.

제 5 조제 1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 4 조 및 제 5 조의 죄.

10의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

제 5 조제 2 항중 통신제한조치는 감청 등으로 한다.

제 6 조의 제목 및 동조제 2 항중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감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한다.

제 6 조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감청 등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감청 등을 받을 통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 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 6 조제 4 항중 통신제한조치청구를 감청 등 청구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을 감청 등의 종류·목적으로,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 5 조제 1 항의

를 제 5 조제 1 항의로 한다.

제 6 조제 5 항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 6 항중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을 감청 등의 종류·목적으로 하며, 동조제 7 항중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감청 등의 기간으로, 통신제한조치기간을 감청 등의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의 제목 및 동조제 2 항중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감청 등으로 하고, 동조제 1 항 본문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감청 등에 관한 긴급처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 7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 7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 등을 할 수 있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청 등(이하 긴급감청 등이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 6 조 및 제 7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감청 등을 한 때부터 36시간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감청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감청 등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감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긴급감청등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긴급감청 등이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 7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감청 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감청 등을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감청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찰관 또는 군사

## 〈参考資料〉

법경찰관이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감청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선임 군판사에게 긴급감청등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감청 등의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및 감청등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 7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감청 등을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긴급감청 등을 할 수 있다.

⑧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감청 등을 한 때에는 자체없이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감청 등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제목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하고, 동조제 1 항 본문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체신판서를 통신기관으로 하고, 동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청 등의 집행을 위탁하는 자는 통신기관 기타 관련 기관에 감청 등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부분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 받은 자는 감청등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부분을 보존하고, 감청 등의 집행판서 · 대상 · 집행일시 등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감청 등의 허가 · 집행 · 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감청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청 등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감청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감청 등으로 취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에서의 감청 등의 허가절차 · 허가여부 · 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중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및 제 1 호중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감청 등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전기통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폭언·협박·희롱 등의 경우 또는 기타 전기통신 수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제 2 항중 제 4 조 내지 제 9 조 및 제12조를 제 4 조 내지 제 8 조, 제 9 조제 1 항 전단, 제11조제 1 항·제 3 항·제 4 항 및 제12조로 한다. 제15조 중 특정한 통신제한조치를 특정한 감청 등으로, 통신제한조치를 감청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 3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감청등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부분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감청 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1조제 1 항(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1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1조제 3 항(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등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부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II. 한나라당안(98.12.7)

통신비밀보호법증개정법률안(제안일 : 1998.12.7)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의 제목(불법검열에의한우편물의내용과불법감청에의한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를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적법한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 5 조제 1 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를 다음 각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로 하고, 동항제 1 호 및 제 2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9 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형법 제 2 편중 제 1 장 내란의 죄, 제 2 장 외환의 죄, 제 5 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죄, 제 6 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2. 군형법 제 2 편중 제 1 장 반란의 죄, 제 2 장 이적의 죄, 제 9 장중 살인의 죄 제 6 조제 1 항중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 5 조제 1 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각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6 조제 2 항중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검사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대하여 하고, 동조제 4 항중 제 5 조제 1 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경과와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 제 5 조제 1 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동조 제 7 항중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중

지하여야 한다로, 3월의 범위안에서를 1월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 7 조의 제목(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국가안보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로 하고, 동조제 2 항 전단중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2 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로, 6월의 범위안에서를 2월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 8 조를 삭제한다.

제 9 조제 1 항중 제 6 조 내지 제 8 조의 통신제한조치를 제 6 조 및 제 7 조의 통신제한조치로 하고, 동조에 제 3 항 내지 제 6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서에 기재된 감청대상자의 전화번호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감청이 집행중일 경우에는 감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감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환실에서 감청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⑤ 감청을 하는 경우 자동녹음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동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서에 기재된 범죄혐의외의 사항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⑥ 감청을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감청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이내에 감청대상자에게 감청기간 및 그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제 1 항 및 제 4 항중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 3 항중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를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인가된 감청설비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15 조의 제목(보고)를 (국회의 통제)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동의할 경우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9 조 내지 제 10 조에 관한 사항과 감청 협조기관 또는 감청집행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参考資料〉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제7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을 하거나 이를 도와준 자

4.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녹음을 하거나 범죄혐의외의 감청 내용을 녹음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IV. 電氣通信監聽業務等處理指針

정보통신부 1998.2.

### 제 1 장 목적 및 적용범위

#### 1. 목적

통신비밀보호법령에 따른 전기통신감청과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여 동 업무의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함.

#### 2. 적용범위

##### 가.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전기통신감청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 또는 채록
-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 당사자의 동의없는 발신(착신) 전화번호 추적  
단,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상적인 전기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화요금 부과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화내역」은 예외
-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 나. 정보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가입자 인적사항 : 가입자 주소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 〈参考資料〉

- 비실시간 통화내역 : 통화일시, 통화개시·종료시간, 상대가입자번호, 사용도수

## 제 2 장 감청집행의 협조절차

### 1. 감청집행기관

- 감청집행기관은 검사(군검찰관 포함, 이하 본 지침에서 같음)·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이며
-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내지 제9조, 부칙에 의한 사법경찰관임.
- 정보수사기관은 검찰·경찰·정보원·기무사임.

### 2. 협조절차

#### ① 신분의 확인

전기통신 감청을 집행하는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받아 확인  
② 허가서(원본)의 확인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 포함, 이하 본 지침에서 같음) 판사의 허가서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의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
  - 감청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
  - 감청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 대통령의 승인서
- ③ 협조대장의 기록
  - 제①항의 집행자 신분 및 제②항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후 협조

### 3. 긴급감청 협조

#### 가. 긴급감청 집행기관

본 지침 제2장중 「1. 감청집행기관」과 동일

나. 협조절차

① 신분의 확인

- 전기통신 긴급감청을 집행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받아 확인
- 집행자는 검사, 검찰주사보, 경위, 정보원의 사법경찰관, 상사,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임.
- ② 검사의 지휘서 또는 정보원장의 조정서 확인
- ③ 검사의 지휘 또는 정보원장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명시된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확인
  - 집행 협조후 24시간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조중지 및 즉시 관할검찰청에 전화 또는 FAX 통보
-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정보원장의 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명시된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확인
  - 집행협조후 24시간 이내에 국정원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조중지 및 즉시 정보원에 전화 또는 FAX 통보
- ④ 긴급감청 사후조치
- 범죄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 5 조)를 위한 경우
  - 긴급감청을 집행한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서를 제시하도록 함.
  - 허가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집행협조를 중지하고, 허가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의 팔호안에 허가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고 집행 협조
- 국가안보(통신비밀보호법 제 7 조)를 위한 경우
  - 긴급감청을 집행한후 48시간 이내에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서(내국인) 또는 대통령의 승인서(외국인)를 제시도록 함.
  - 허가서(또는 승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협조중지하고, 허가서(또는 승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 1

## 〈参考資料〉

호서식의 팔호안에 허가 또는 승인내역을 추가 기재하고 집행협조

### 제 3 장 수탁집행 절차

#### 1.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가. 위탁기관

본 지침 제 2 장중 「1. 감청집행기관」과 동일

나. 수탁기관

전기통신 감청을 받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  
할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기관

#### 2. 수탁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장과 집행을 위탁한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 3. 수탁집행 절차

##### ① 신분 확인

위탁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받아 확인

##### ② 위탁의뢰서 접수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위탁의뢰서 접수

##### ③ 허가서 등의 사본 접수

허가서의 사본 접수

##### ④ 집행대장의 기록

제①항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제②, ③항의 위탁의뢰서, 허가서 사본을 접수  
하고, 이상에 기재된 내역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 2 호서식에  
기록후 집행

##### ⑤ 감청집행 결과의 인계

감청집행 결과를 위탁기관에 인계하고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 2 호

## 서식에 기록

### 4. 긴급 수탁집행

본 지침 제2장중 「3.긴급감청 협조」 및 제3장중 「3.수탁집행절차」를 긴급수탁집행에 준용

### 5. 서비스의 제공 및 비용청구

-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을 위탁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게 그 집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전기통신감청의 집행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탁업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의 산정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장과 수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함.

## 제4장 정보제공

### 1. 제공대상기관

수사상 필요에 의한 관계기관으로서 검찰, 경찰, 정보원, 군수사기관, 국세청, 관세청임.

### 2. 제공절차

#### ① 신분확인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 받아 확인

#### ② 요청방법

- 정보제공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함.

- 요청문서에는 수사대상 범죄명,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수사상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명시되어야 함.

- 내용이 노출될 경우 수사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예외

#### ③ 제공정보의 범위

- 제공자료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자료에 한함.

## 〈参考資料〉

### 제 5 장 감청 · 정보업무의 관리

#### 1. 업무취급 담당자의 지정

통신사업자는 감청 및 정보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단, 감청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함

#### 2. 문서처리

- 전기통신 감청의 결재권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취급기관의 장임.
- 문서처리와 실제 전기통신 감청업무 담당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3. 문서보존

구 분	비밀등급	보존기간
위탁의뢰서, 허가서 등의 사본	Ⅲ급	예고문상 명시기간 (예고문이 있는 경우)
		집행기간 (예고문이 없는 경우)
협조대장, 집행대장	Ⅲ급	3년
감청관련 문서접수대장	Ⅲ급	3년
감청관련사항 집계보고서	대외비	2년
담당자 지정 · 관리문서	대외비	10년
정보제공 관련문서	대외비	1년

\* 전기통신감청 요청시 허가서 등에 상위등급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보관

#### 4. 문서보관

- 전기통신감청 요청시 실제 감청업무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즉시 기록하고

### 보관

- ▣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
  - 집행대장 등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과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준용

### 5. 국회보고

- ▣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국정조사위원회의 제출 요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고 보고체계를 구축
- ▣ 감청 및 정보제공 현황을 지역별(특별시, 광역시, 도)로 작성·관리하고 매분기후 다음달 10일전까지 불임양식 1, 2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에 제출

## 제 6 장 업무취급시의 유의사항

### 1. 감 청

- ▣ 전기통신감청의 집행은 전기통신의 정상적인 소통 및 그 유지·보수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전기통신 감청의 허가과정, 허가여부, 허가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전기통신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 ▣ 전기통신 감청의 집행자는 그 집행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전기통신 감청을 받는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2. 정 보

- ▣ 누구든지 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 제공된 정보는 수사상 필요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V.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및 秘密維持에 關한 規則

제정 1994. 6.28. 대법원규칙 제1307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 2 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 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 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제 3 조 (허가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당직판사가 담당한다.

제 4 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판사에의 회부) ①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이하 “허가청구서”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서울형사지방법원은 종합접수실의 선임 영장접수담당자, 부산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은 형사단독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형사과가 없고 민형과만 있는 법원 또는 지원은 민형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사무과만 있는 지원은 사무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이하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이하 “처리상황카드”라고 한다)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용지(이하 “허가서 용지”라고 한다)에 각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협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

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제 5 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담당판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제 6 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철(이하 “처리상황카드철”이라고 한다)에, 허가청구서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철(이하 “허가청구서철”이라고 한다)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 7 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 6 조 제 2 항과 같이 기입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를 처리상황카드철에, 제 2 항의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를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 8 조 (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를 대신하여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 9 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건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 3 조 내지 제 8 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이하 “기간연장청구서”라고 한다) 또는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 청구서철에 편철한다.

제 10 조 (보존기간) ① 처리상황카드철은 3년간, 허가청구서철은 1년간 보존한다.

## 〈参考資料〉

②제 1 항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제 1 항의 각 부철이 조제된 해의 다음해 1 월 1일로 한다.

### 제 3 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제11조 (비밀취급인가) ①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및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에게 II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제 1 항의 접수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업무를 대리할 부장판사 및 제 1 항의 접수담당자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그 부장판사 및 직무대행자에게 II급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제12조 (비밀의 분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에 관한 처리상황카드, 허가서,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그 부속서류는 허가청구서의 비밀구분에 따라 같은 등급의 비밀로 각 분류한다.

제13조 (허가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판사에의 회부) ①허가청구서는 고등법원 형사과의 선임 접수담당자 또는 그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자(이하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라고 한다)가 직접 접수한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 용지에 혐의사실의 요지 또는 통신제한조치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와 함께 담당판사에게 회부한다.

제1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 허가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 5 조를 준용한다.

제15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II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②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

## V.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및 秘密維持에 關한 規則

한다.

제16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와 담당판사의 기각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위 허가서 용지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제17조 (정상근무시간 종료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후 통신제한 조치 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의 접수사실을 문서전명부에도 등재하는 것 이외에는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①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비밀로 분류한 문서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해당 허가청구서 또는 기간연장청구서의 보호기간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② 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통신제한조치허가 등에 관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한다.

### 제 4 장 보 칙

제20조 (준용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보고 99-09  
通信秘密保護法의 改正方向

---

1999년 12월 24일 印刷  
1999년 12월 31일 發行

發 行 人 徐 承 完  
發 行 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 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

￦ 5,5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113-0 93360

